##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77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이달희

박충권 • 이종욱 • 김승수

김예지 • 김석기 • 정희용

김정재 · 엄태영 · 박수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 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,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오히려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제기됨.

한편, 과거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 및 매출액·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,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또 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

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,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"을 "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간주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	제2조(정의) ①
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	
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	
企業) 중 <u>다음 각 호의 요건을</u>	<u>업종별 평균매출액</u>
<u>모두 갖춘</u> 자를 말한다.	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
	<u>에 해당하는</u>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	<u>&lt;삭 제&gt;</u>
<u>일 것</u>	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	<u>&lt;삭 제&gt;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	
해당할 것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